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392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3182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4.08.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06.)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05.)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2.)
2	3473	김병기의원 등 11인	2024.09.0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06.)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05.)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2.)
3	5222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11.04.	상정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3.12.)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05.)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2.)
4	14594	김용민의원 등 12인	2025.11.2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2.04.)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05.)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2.)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2.)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1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

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 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p> <p>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p>

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 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